

나홀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실태와 특징

권리 밖 사각지대 불안정노동 개선방향 모색

2025.11.24. (월) 오후 15:00

서대문 바비엡교육센터 Room A(3층)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실태와 특징

- 권리 밖 사각지대 불안정노동 개선방향 모색

□ 토론 개요

- 일시 : 2025년 11 24일(월) 15:00
- 장소 : 바비엡교육센터 3층 RoomA
- 주최 : 일하는시민연구소·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사무금융분투재단

□ 프로그램

시간	발표 토론
15:00 ~ 15:10	소개 및 인사말
15:15 ~ 15:30	<활동공유>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제보 사이트 소개와 활동 방향 공유
15:30 ~ 16:00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사발표>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과제 :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및 일하는사람기본법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16:00 ~ 17:00	<토론> - 송명진 (한국플랫폼노동프리랜서공제회 사무국장) -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창작콘텐츠노동자 지회장) -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장영은 (청년유니온 프리랜서 커뮤니티 매니저) - 배 인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사무관)
17:00 ~ 17:20	종합토론

[인사말]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신희균 이사장

[활동 공유]

1. 나홀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제보 사이트 소개와 활동방향 01
- 김정은 (일하는시민연구소 사무국장)

[조사 발표]

-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과제 09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토 론]

1. 송명진 (한국플랫폼노동프리랜서 공제회 사무국장) 27
2.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창작콘텐츠노동자 지회장) 37
3.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41
4. 장영은 (청년유니온 프리랜서 커뮤니티 매니저) 47
5. 배 인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사무관) 53

[발표 자료]

-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실태와 개선과제 모색 57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인사말]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이사장 신필균

인사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신필균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필균입니다.

우분투재단은 2019년 ‘차별없는 일터,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전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그해 우리가 주목한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그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 문제입니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그 속도에 비해 노동법과 제도의 정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노동자조차 자신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라이더유니온이 배달 노동자들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배달 시간’을 산출한 것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이들이 처한 위험 구조를 객관적으로 사회에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노동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그 책임 주체가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매개체 뒤로 은폐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의 보상 체계(콜 수락률, 미션 등 인센티브)로 속도경쟁에 내몰리고, 쿠팡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웹기반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노동시장

실태조사(여성 65.6%, 평균연령 35.8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작업할 때 약관 가입 이외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62.7%), 1주 4.7일 작업 기준 월 소득이 평균 약 1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등 부당대우를 경험하지만, 95%가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 재단과 함께 배달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현장을 외부로 알려내기 시작해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돕는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등 단체의 협력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시장의 실태가 조사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님께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토론해 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 단위에서 오랫동안 쌓아 온 노력이, 이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을 조짐이 보입니다. 이 소식은 우분투재단에게 매우 반가운 변화의 신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 밖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존중받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간다는 점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재단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를 포용하기 위한, 보편적 노동 기본권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올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이 이 사회에 또 한 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신 필 균

[활동 공유]

**나홀로 플랫폼노동 · 프리랜서
제보 사이트 소개와 활동방향**

- 김정은 (일하는시민연구소 사무국장) -

홀로 플랫폼노동 · 프리랜서 제보 사이트 소개와 활동방향

- 김정은 [일하는시민연구소 사무국장] -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제보 사이트 소개와 활동방향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협력사업
(2023-2025)

왜 '나 홀로 노동자'에 주목했나?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 발전 과정 속 제도 밖 불
안정 노동자 증가

1인플랫폼노동·프리랜서
증가에 따른 보호조치
필요성 대비 정책 지원 등
전무한 상황

법률·사회적 보호 등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 확대

1차년도 (2023)

프리랜서 당사자네트워크 조직, 프리랜서 114 법률상담
w. 청년유니온

교육·마음건강 지원 사업 진행
w.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실태조사(설문 응답 566명, 면접조사 강사·미디어제작지원
·웹디자이너·데이터라벨러) 분석 기반 사회적 의제화, 제도 변화 촉구



2차년도 (2024)

1차년도 사업 종결 후 마켓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심층 조사 필요성 파악
조사 결과 통한 집중 문제제기 필요성 도출

마켓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크몽, 숨고, 클라우드웍스 등)
실태조사(*851명 조사, 국내 최초) 통해 객관적 현실 파악

약관, 수수료, 표준계약, 부당대우 등의 내용, 언론 등 사회적 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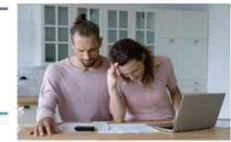
국회 및 정부(공정위, 노동부) 차원 법률, 규정 등 제도 개선 촉구



[단독] 평균 14.6%... 비싼 수수료에 우는 온라인플랫폼 노동자들

2024년 7월 22일 14:00

🔖 📷 🗨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숨고, 크몽, 클라우드웍스)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숨고의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숨고는 평균 14.6%로 숨고(14.6%), 크몽(11.5%), 클라우드웍스(10.5%) 순으로 나타났다. 숨고는 숨고(14.6%), 크몽(11.5%), 클라우드웍스(10.5%)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2025)

웹 기반 플랫폼노동 ·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상 부당대우 등
구체적 사례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보 사이트 구축

웹 기반 플랫폼 · 노동 프리랜서 노동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 2024년 국회 공동 토론회 개최 이후,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10개 유형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 성과

* 관련 기사 정책뉴스 "프리랜서 권리 찾아준다, 재능마켓 불공정 관행 시정"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1570>

D 경향신문

'중개하고 책임은 나눌라라' 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2025년 7월 22일 14:00

🔖 📷 🗨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프리랜서 권리 찾기' 토론회 모습.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숨고, 크몽, 클라우드웍스)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숨고의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숨고는 평균 14.6%로 숨고(14.6%), 크몽(11.5%), 클라우드웍스(10.5%) 순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이트 구축 freelancenet.org

- 웹 기반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불공정 사례 제보
- 데이터 기반 제도 개선·사회적
의제화



소개

나홀로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권리 찾기



나홀로 플랫폼 노동·프리랜서로 일하며 겪은 불합리한 계약,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취소나 갑질.

혼자 감당하기엔 벅했던 그 경험을 모읍니다.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현실을 기록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만들어 갑니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로 일하며 겪은 불합리한 계약,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 취소나 갑질. 혼자 감당하기엔 벅했던 그 경험을 모읍니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제보하기

협력 기관 및 단체 +

정부 기관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알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Korea Worker Institute·Union Center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제보

나홀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얻는 '플랫폼 노동'은 최근 몇 년 사이 흔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떠올리면 흔히 음식 배달, 가사, 운송과 같은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 분야를 먼저 떠올렸지만, 점차 비대면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디자인, 마케팅, 상담 등 '온라인 플랫폼 노동'을 중개하는 재능마켓 플랫폼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능마켓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중개를 통한 프리랜서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비, 과도한 수수료, 적절 조건 외 요구, 보수 지연 지급 등 불공정 거래, 부당 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 처리나 분쟁 해결을 위한 약관 조항 개설 및 운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관련 제보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문의] unioncenter@daum.net
[주관] 알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union.center0313@gmail.com [계정 전환](#)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양식을 제출하면 Google 계정과 연결된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사진이 기록됩니다.

다음
양식 지우

- [부당대우: 보수소득]
- [부당대우: 과업작업]
- [부당대우: 괴롭힘 등]
- [관리구제: 정책지원]
- [관리구제: 권익상담]
- [관리구제: 법률개선]
- [관리구제: 기타문제]
- 기타: _____

제보 사항 *

*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제보 사항은 익하원칙으로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내 답변

관련 자료 첨부

* 제보 관련하여 계약서 등 객관적 사실 자료를 업로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린 후 업로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실 자료가 연속 경우에는 업로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

정보제공

23	연구기관 및 학 술단체	Nordic Council of Ministers: 북유럽 비정규 근로 연구 프로젝트	▼
22	연구기관 및 학 술단체	Freelancing.eu: 유럽 프리랜서 플랫폼 및 자원 디렉토리	▼
21	연구기관 및 학 술단체	European Journalism Centre: 프리랜스 저널리즘 여성센터 운영	▼
20	노동조합 및 민 간단체	[유럽]PZO (네덜란드): 프리랜서/자영업자 커뮤니티 우선 조직	▼
19	노동조합 및 민 간단체	[유럽]The Workers Union (영국): 프리랜서 포함 모든 근로자 권익 보호	▼
18	노동조합 및 민 간단체	[유럽]European Federation of Journalists (EFJ): 프리랜서 기자 권익 보호 활동	▼
17	노동조합 및 민 간단체	[유럽]European Freelancers Week: 유럽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이벤트	▼
16	노동조합 및 민 간단체	[유럽]EU Affairs Freelancers Association (EFA): EU 정책 관련 프리랜서 권익 대변	▼
15	노동조합 및 민 간단체	[미국]National Writers Union: 프리랜서 임금 제고 대응 활동	▼

향후 활용 방향

계약 위반, 부당 대우
등 사례 수집

플랫폼노동·프리랜서
관련 실태조사 등
국내외 자료 축적

수집 사례 기반
정책, 입법, 제도개선
제안

[조사 발표]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과제 :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및
일하는사람기본법**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과제 :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및 일하는사람기본법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 권리 밖 사각지대 노동¹⁾

- 모바일 기기, 접근성 향상된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결제 시스템 등에 힘입어 기술 발전과 확장의 속도로 노동 세계는 빠르게 플랫폼노동화(platformisation)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접목의 '장' 역할을 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과 성장임. 디지털 플랫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노동정책, 노동자 및 생산 단위에게 새로운 위기와 변화가 되고 있음. 한국도 크몽, 숨고, 클라우드 워크스와 같은 웹기반 플랫폼노동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ILO는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local-based digital platforms)만이 아니라, 웹 기반 플랫폼노동(web-based digital platforms) 관련 연구조사를 진행했음(*2024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노동자 1,153명 대상 진행).²⁾ 이들의 프로필, 근무환경, 소득은 불안정성, 비정규직, 사회보장 부재(42.2%: 실업보험 19.1% 적용; 산재보험 22.6% 적용)가 확인되며, 52%는 플랫폼을 부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은 각국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됨.³⁾

1) 연구소에서는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지원으로 '2025년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국제청 3.3% 인적용역 사업소득 납부자와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산재, 고용) 가입 적용 현황과 함께 2025년 노동실태는 크몽, 숨고, 클라우드워크스 등 웹기반 플랫폼노동 45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2) 국내 웹기반 플랫폼은 4개 유형으로 구분 분류 가능한데 ㉠유형은 플랫폼 개입과 노동력 관리 개입이 모두 존재하는 공동사업주로서 성격의 '지배개입형 플랫폼'이며, ㉡유형은 플랫폼 개입은 있으나 플랫폼 노동력 관리는 없는 '위계형 플랫폼'이며, ㉢유형은 플랫폼 개입은 없으나 노동력 개입은 있는 '중개개입형 플랫폼'이며, ㉣유형은 플랫폼 개입과 노동력 개입 모두 없는 '시장형 플랫폼' (매칭형 : 숨고, 마켓형 : 크몽)으로 구분 가능함(김종진, 2024,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 사각지대 현실과 과제」, 제 37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4쪽).

3) Túlio Cravo(2025), *Survey on workers on web-based digital platforms New dat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February, 2025. ILO.

- 2024년 라틴아메리카의 웹기반 플랫폼노동자 조사결과(Túlio Cravo, 2025) 평균 33세, 52% 플랫폼노동 주 수입원, 63.3% 1주일 5일 이상 노동(5일 29%, 6일 16.2%, 7일 17.9%)으로 파악되었음. 이들의 주된 부정적 문제점은 소득 불안정(13%), 인터넷 연결 문제(11%), 성장 기회 부족(10%) 등임. 기타 문제는 업무 계획 수립 어려움(8%), 전문적 인정 부족(8%), 일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7%), 고립감(6%), 장시간 근무(4%), 자율성 부족(4%), 복잡한 업무(4%), 업무 과부하(4%) 등이었음.
- 그렇다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관련하여 향후 어떤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지 논의할 시점임. 이를 위해 이 글은 비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 국세청 인적용역 3.3% 사업소득 귀속 납부자 규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음.
- 특히 온라인 플랫폼(앱)을 사용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상황과 실태를 분석했음. 설문조사는 크몽, 숨고, 클라우드 워크 등의 플랫폼앱을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노동자들임. 이를 통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데 탐색적 자료 성격을 가질 것임.

II. 권리 밖 사각지대 비임금노동자 규모와 사회안전망 적용 현황

1.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규모 추이

-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시장은 총노동 규모 모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임금노동자 규모 증가 추이(2,962천명) 중 정규직(963천명)보다는 비정규직(1,999천명)이 더 많았음. 반면 ‘특수고용’ 형태의 비전형 노동자는 감소(180천명)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15천명)는 증가했음([표1]).

[표1] 노동시장 경제활동 다양한 고용 규모 변화 추이(‘14년~’23년, 단위: 천명)

구분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국세청 사업소득
	임금노동자			불안정 제도 밖 노동자		인적용역 원천징수 3.3% 귀속납부자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전형 노동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14년	18,992	12,869	6,123	2,137	-	4,005

구분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국세청 사업소득
	임금노동자			불안정 제도 밖 노동자		인적용역 원천징수 3.3% 귀속납부자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전형 노동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15년	19,474	13,166	6,308	2,229	4,055	4,635
2016년	19,743	13,262	6,481	2,245	-	5,185
2017년	20,006	13,428	6,578	2,112	4,153	5,631
2018년	20,045	13,431	6,614	2,071	4,030	6,131
2019년	20,559	13,078	7,481	2,045	4,127	6,683
2020년	20,446	13,020	7,426	2,073	4,193	7,043
2021년	20,992	12,927	8,066	2,278	4,249	7,878
2022년	21,724	13,568	8,156	2,131	4,336	8,473
2023년	21,954	13,832	8,122	1,957	4,370	8,620

자료 : 1) 임금노동자 및 비전형노동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 부가조사 각 년도별 자료 재분석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통계청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각 년도별 자료 재분석
 3) 국세청 사업소득 인적용역 3.3% 귀속납부자료는 21대(장혜영), 22대 국회(차규근) 의원실 요청자료 재분석

○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난 10년 사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 중 일부 ‘비정규직’(일용직 등)이나 ‘비전형노동자’와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사이에 중첩된 개인사업자 형태(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2014년 4,005천명에서 2023년 8,620천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비정규직과 함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장법 등에 있어 사각지대가 확인되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함.

[표2] 국세청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 시행 후 소득자료 현황(2024, 월평균, 단위: 천명)

제출 연도	합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인적용역 기타소득자2)		용역제공자	
	사업자	소득자	사업자	소득자	사업자	소득자	사업자	소득자	사업자	소득자
'24년	989	7,827	386	3,073	573	4,074	28	496	1.7	184
'23년	929	7,199	389	3,092	539	3,925	-	-	0.8	182
'22년	879	6,997	390	3,055	488	3,775	-	-	0.8	167
'21년1)	838	6,812	397	3,121	441	3,578	-	-	0.7	113

* 주 : 1) 일용근로소득자·인적용역사업자는 '21년 7월 지급분부터 제출, 용역제공자는 '24년 11월 지급분부터 제출 시행
 2)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는 '24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시행
 * 자료: 국세청 (22대 국회 기재위 차규근 의원실 보도자료, 2025.7.13.)

2.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노동) 산재·고용보험 적용현황

- 현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이후 가입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가입은 145만 2천명이고, 고용보험 가입은 85만1천명(두루누리 지원 14만5천명)임. 각 사회보험 형태별 특징을 보면, (1)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 40만7천명, 킷서비스기사 34만5천명 순이고, 고용보험은 보험설계사 34만5천명, 킷서비스기사 18만5천명) 순임.

[표3] 특고·플랫폼노동 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현황1(단위: 명, 원)

25년 6월	산재보험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인원
	가입자 수	1인 평균 보험료 (노무제 공자 부담분)	가입 현황		1인 보험료 현황(평균)			
			사업장	가입자	월보수	보험료	종사자 부담	
계	1,452,840	12,726	75,439	851,056	3,273,515	52,281	26,141	145,349
보험설계사	407,363	10,455	1,082	270,791	5,236,809	82,282	41,141	108,434
교육교구학습지방문강사	37,059	5,394	503	27,419	1,847,195	30,875	15,438	1,595
택배기사	74,955	31,365	4,904	78,076	3,617,008	57,896	28,948	1,075
골프장캐디	41,566	10,388	449	41,243	2,688,581	42,542	21,271	973
방과후학교 강사	81,749	3,579	5,124	34,305	918,582	16,103	8,052	19,790
대출모집인	4,208	12,091	137	3,823	4,923,520	78,899	39,450	1,309
신용카드회원모집인	35,948	1,473	12	3,129	4,154,153	66,698	33,349	519
소프트웨어 기술자	22,153	17,012	2,217	22,597	6,097,386	97,471	48,735	950
관광통역안내사	1,247	4,407	104	933	1,469,114	24,228	12,114	991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6,293	8,203	39	23,843	2,321,211	37,729	18,865	575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2,787	14,438	156	3,079	3,759,974	60,318	30,159	237
방문판매원	54,763	7,569	1,613	18,094	4,380,719	70,654	35,327	878
킷서비스기사	345,129	11,031	27,916	185,149	1,691,277	28,384	14,192	164
대리운전기사	93,423	10,398	24,956	78,901	441,673	7,399	3,700	4,521
화물차주 I	219,003	23,504	1,055	17,748	4,232,958	66,889	33,445	497
화물차주 II	195	8,145	952	31,049	3,349,608	53,320	26,660	1,481
건설기계조종사	3,728	32,626	3,762	29,944	1,554,722	24,464	12,232	689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271	16,998	458	856	1,853,540	29,994	14,997	671

* 자료: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자료 필자 채구성(원자료: 근로복지공단, 2025.6)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별 가입 현황을 보면, (1) 산재보험 가입 남성은 82만2천명이고, 여성은 57만명이며 (2) 고용보험 가입은 남성 49만6천명이고, 여성 35만4천명임.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면, (1) 산재보험은 30대 미만 청년층 9만4천명, 60대 이상 고령층 26만명 순이며, (2) 고용보험 : 30대 미만 청년층 5만4천명, 60대 이상 고령층은 11만1천명 순임.

[표4] 특고·플랫폼노동 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현황2(단위: 명, 원)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수	1인 평균 보험료 (노무제공자 부담분기준)	가입자	1인 보험료 현황(평균)			두루누리 지원 인원	
				월보수	보험료	종사자 부담		
전체	1,393,117	12764	851,056	3,273,515	52,281	26,141	145,349	
성별	남성	822,960	16,641	496,516	2,862,190	45,762	22,881	82,403
	여성	570,157	8,886	354,540	3,849,556	61,411	30,706	62,946
연령	30세 미만	94,516	9,785	54,768	2,481,627	40,350	20,175	6,865
	30대	227,148	12,527	143,500	2,982,320	47,835	23,918	23,482
	40대	393,692	13,629	256,606	3,158,668	50,645	25,323	44,848
	50대	417,063	14,922	284,549	3,537,361	56,321	28,161	49,638
	60세 이상	260,698	13,051	111,633	3,627,801	57,311	28,656	20,517

○ 한편 예술인도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1)산재보험 가입은 3,412명(여성 1,461명, 남성 1,960명)이고, (2)고용보험 가입은 40,379명(여성 24,356명, 남성 16,023명, 두루누리 지원 2,787명)임. 고용보험 적용 관련 예술인 12개 활동분야별 현황을 보면, 연 예 15,740명, 만화 6,125명, 음악 5,762명, 영화 3,796명 순임.

[표5] 예술인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현황1 - 성별, 연령별 (단위: 명, 원)

산업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수	1인 평균 보험료	가입자	1인 보험료 현황(평균)			두루누리 지원 인원	
				월평균 보수	보험료	종사자 부담		
계	3,421	26,337	40,379	2,904,929	46,479	23,239	2,787	
성별	남성	1,960	28,732	16,023	3,652,488	58,440	29,220	1,061
	여성	1,461	23,124	24,356	2,413,134	38,610	19,305	1,727
연령	30세 미만	555	28,802	12,932	1,885,013	30,160	15,080	1,257
	30대	1,336	25,898	14,934	2,762,860	44,206	22,103	1,001
	40대	11,447	27,848	7,902	4,272,175	68,355	34,177	366
	50대	430	25,385	3,862	4,122,499	65,960	32,980	141
	60세 이상	489	23,688	749	2,644,524	42,312	21,156	23

* 주 : (적용 현황) 사업장 및 가입자 계는 분야간 이중취득을 제거한 수치로 분야간 단순 합보다 작음 (보험료) 월평균보수×1.6%(사업주, 예술인 각 0.8% 부과)

[표6] 예술인 12개 분야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2 - 12개 활동분야별 (단위: 명, 원)

구분	적용 현황		1인 보험료 현황(평균)			두루누리 지원 인원
	사업장	가입자	월평균 보수	보험료	종사자 부담	
계	2,592	40,379	2,904,929	46,479	23,239	2,787
문학	254	1,554	2,052,601	32,842	16,421	102
미술	207	810	1,528,996	24,464	12,232	41
음악	486	5,762	966,631	15,466	7,733	602

구분	적용 현황		1인 보험료 현황(평균)			두루누리 지원 인원
	사업장	가입자	월평균 보수	보험료	종사자 부담	
무용	152	1,094	1,197,354	19,158	9,579	119
연극	355	4,201	2,152,855	34,446	17,223	427
영화	356	3,796	4,277,362	68,438	34,219	245
연예	649	15,740	4,162,385	66,598	33,299	555
국악	132	1,441	886,288	14,181	7,090	31
만화	539	6,125	1,615,779	25,852	12,926	583
건축	3	16	2,145,938	34,335	17,168	1
사진	35	70	1,292,375	20,678	10,339	3
기타	297	1,585	2,457,235	39,316	19,658	78

Ⅲ.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시장 실태

－ 크몽, 숨고, 클라우드웍스 노동시장 실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⁴⁾

- 2025년 한국의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재 플랫폼 활용기간은 2.7년(숨고 2.9년, 크몽 2.7년, 클라우드웍스 2.3년)이었고 전체 노동시장 경력은 3.6년 정도 되었음. 플랫폼노동자의 1일 작업시간은 6.3시간(10시간 이상 8.6%)이었고, 1주일 작업 요일은 4.7일(5일: %, 6일: 16.7%, 7일: 5%)이었음.
- 웹기반 플랫폼노동자의 주된 플랫폼 통한 월 평균 소득은 146만7천원(크몽 169.2만원, 숨고 140.3만원, 클라우드웍스 43.8만원)이었으며, 복수의 플랫폼노동을 포함한 총소득은 203.1만원(크몽 239.2만원, 숨고 216.7만원, 클라우드웍스 67.2만원)이었음.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지출을 본인의 소득에서 21.3%나 되는 상황임.
- 한편, 플랫폼노동자가 1건의 일감/과업을 수행할 경우 플랫폼앱에서 수수료로 14.5%(웹툰·웹소설 26%; 크몽 14.7%, 숨고 14.1%, 클라우드웍스 13.1%) 마진으로 챙기고 있었음. 플랫폼기업의 수수료 “20% 이상”은 13.4%(25% 이상은 12.4%)였고, “10% 미만”은 26.9%(5% 미만은 9.5%)였음. 작업 지출 비용은 콘텐츠작업(37.1%) 및 웹툰·웹소설(24.4%) 분야가 높았음.

4) 이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대상(본인의 일감이나 업무 및 과업 수행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집단 대상: 기노동 형태 배달운송, 기사서비스 등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 제외) 2025년 6월 한달 동안 ㈜엠브레인 퍼플릭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임. 조사 표본은 456명(여성 299명/65.6%)이며, 평균 연령은 35.8세(19~34세/46.1%, 35~44세 152명/33.3%), 활동 기간은 3.6년(3년 미만 28.7%, 3년~6년 미만 59.4%)이며, 서울경기인천 지역 표본이 80.7%임.

[표7]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플랫폼 작업 현황과 소득, 지출

구분	플랫폼 경력, 작업, 작업시간				플랫폼 소득, 지출				
	플랫폼 앱 활용 기간 (년)	경력 기간 (년)	1일 작업 시간	1주일 작업 요일	주 활용 플랫폼 월평균 소득 (만원)	총소득	작업지출 유지비용 비중 (%)	플랫폼 1건 수수료 비중 (%)	
전체	2.7	3.6	6.3	4.7	146.7	203.1	21.3	14.5	
플랫폼 앱	크몽	2.7	3.5	6.7	4.9	169.2	239.2	18.3	14.7
	숨고	2.9	3.8	6.5	4.8	140.3	216.7	19.0	14.1
	클라우드웍스	2.3	2.9	4.3	4.0	43.8	67.2	13.8	13.1
	기타	2.9	3.9	6.0	4.8	142.8	149.8	36.7	14.4
활동분야	웹개발, 디자인	3.2	3.6	7.9	5.3	261.2	288.8	19.5	12.5
	문서작성, 번역	2.6	3.7	6.2	4.5	137.9	221.9	17.0	14.0
	디자인, 영상편집	2.8	3.4	6.9	4.7	136.7	231.8	16.9	15.5
	웹툰, 웹소설	3.1	3.8	6.7	5.2	131.3	203.2	24.4	26.0
	콘텐츠작업	2.7	3.9	6.1	5.0	141.6	155.1	37.1	13.8
	예술, 창작	2.7	4.3	5.2	4.9	91.7	153.1	19.8	17.3
	IT분야	2.3	3.6	4.0	3.9	68.6	106.7	15.7	8.8
	광고, 마케팅	2.3	3.2	6.0	4.2	105.9	139.3	24.3	13.3
기타 작업	1.9	2.8	4.3	3.8	70.9	116.5	19.5	11.5	

○ 웹기반 플랫폼노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EU 지침(2024)의 핵심인데 2025년 설문조사에서는 약관 내용(10.7%), 평가리뷰(14.5%), 단가보수(25.9%)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됨. 플랫폼노동 작업 활동분야에서의 불공정성은 약관은 웹툰·웹소설(48.4점)이 불공정 인식이 높았고, 문서작성·번역은 일감작업 배분, 단가보수, 평가리뷰에서 가장 불공정 인식이 높았음.

[표8]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플랫폼 활동 공정성과 투명성(단위: %)

5개 분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100점)
플랫폼 앱을 통해 일감 얻고자 할 때 중사간 결쟁은 심한편	0.2	2.4	42.8	41.0	13.6	66.3
플랫폼 앱으로부터 업무 지시 떠나, 상황에 따라 작업 수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	2.0	7.2	33.8	45.8	11.2	35.7
플랫폼 앱이 일감이나 작업량 등 배분 공정한 편	1.5	13.2	48.9	33.6	2.9	44.2
중개플랫폼 앱의 단가, 보수 책정은 공정하다고 생각	2.0	23.9	39.5	28.1	3.5	49.7
중개플랫폼 통한 작업 수행 시, 중사자 평가(리뷰, 별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편	2.2	12.3	43.6	36.2	5.7	42.3
플랫폼 앱 회원 가입 시 약관 내용 공정한 편	1.3	9.4	49.6	35.5	4.2	57.9

* 주 : 설문조사는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를 점수(0점~100점)로 환산한 것이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의견 해석

- 플랫폼노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4개 영역의 조사 관련 인식을 보면, ‘약관 불공정성’(크라우드웍스 48.1점)을 제외하고 ‘일감작업 배분의 불공정성’(크몽 42.9점, 숨고 41점), ‘단가보수 불공정성’(크몽 47.6점, 숨고 46.3점), ‘평가리뷰 불공정성’(크몽 37.4점, 숨고 44.2점) 모두 크몽·숨고가 높게 인식되고 있었음.

[표9]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플랫폼 활동 공정성과 투명성(단위: 점수)

구분	플랫폼노동 상황		공정성과 투명성				
	플랫폼 경쟁도	업무지시 자율성	일감작업 배분공정성	단가보수 공정성	평가리뷰 공정성	약관 공정성	
전체	66.3	64.2	44.2	49.7	42.3	57.9	
플랫폼 앱	크몽	68.9	63.5	42.9	47.6	37.4	59.5
	숨고	63.9	69.9	41.0	46.3	44.2	60.9
	크라우드웍스	77.5	61.8	58.8	71.3	57.5	48.1
	기타	56.9	59.6	45.3	49.7	45.9	54.4
활동분야	웹개발, 디자인	74.1	69.4	44.7	50.3	38.2	59.7
	문서작성, 번역	62.7	65.9	38.5	43.9	41.8	61.5
	디자인, 영상편집	67.2	60.5	39.7	45.2	36.0	64.0
	웹툰, 웹소설	71.9	62.5	56.3	62.5	59.4	48.4
	콘텐츠작업	56.3	54.7	50.4	48.9	47.4	53.7
	예술, 창작	66.1	71.3	43.8	52.1	43.8	53.6
	IT분야	72.6	64.2	48.8	61.9	45.2	56.0
	광고, 마케팅	64.6	60.4	47.9	58.3	50.0	50.0
	기타 작업	65.3	70.9	46.5	54.9	47.9	51.4

* 주 : 설문조사는 5점 척도 문항(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을 점수(0점~100점)로 환산한 것이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의견 해석

- 게다가 플랫폼노동의 ‘자율성’과 ‘경쟁’ 현황을 보면 당사자들은 일감을 얻는 과정에서 경쟁 인식(54.6%)은 심한 편이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율성 부족(14.7%)도 확인됨. 플랫폼 일감의 경쟁은 보수·단가가 가장 낮은 크라우드웍스(63.9점)로 크몽(68.9점)이나 숨고(63.9점)에 비해 높았음. 노동과정에서 자율성 또한 크라우드웍스(61.8점: 크몽 63.5점, 숨고 69.9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IV.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상황 실태

- 크몽, 숨고, 크라우드웍스 노동 상황 실태 : 계약소득, 부당대우

- 웹기반 플랫폼노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은 계약서 체결 유무, 수수료 방식, 업무 수행 과정의 법적 대응 유무를 통해 확인 가능함. 기존의 플랫폼노동 연구조사에서도 ‘계약 불균등성의 약관 문제’(김종진, 2022:11)와 ‘온라인 플랫폼노동 문제점(김종

진, 2024:10)⁵⁾에서 확인된바 있음. 계약서 미체결은 62.7%(크몽 63.6%, 슝고 60.2%, 크라우드웍스 42.5%)였고, 활동 분야 중에서는 콘텐츠작업(89.7%), 예술창작(75%), 광고·마케팅(75%)에서 높았음.

[표10]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계약, 수수료 방식, 부당 대우 해결 방식1

플랫폼 활용앱	작업 때, 약관 가입 이외 별도 계약서 체결		주된 플랫폼 앱의 수수료 방식				부당한 대우 유경험시 법적인 대응 유무	
	미체결	체결	1건당 고정 비율	1건당 고정 금액	수수료 없음	잘 모름	없음	있음
전체	62.7%	37.3%	53.1%	10.5%	5.5%	30.9%	95.0%	5.0%
크몽	63.6%	36.4%	73.2%	9.2%	2.6%	14.9%	95.2%	4.8%
슝고	60.2%	39.8%	40.7%	17.6%	5.6%	36.1%	93.0%	7.0%
크라우드웍스	42.5%	57.5%	37.5%	17.5%	15.0%	30.0%	100.0%	
기타	73.8%	26.3%	20.0%	1.3%	8.8%	70.0%	88.9%	11.1%

[표11]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계약, 수수료 방식, 부당 대우 해결 방식2

활동분야	작업 때, 약관 가입 이외 별도 계약서 체결		주된 플랫폼 앱의 수수료 방식				부당한 대우 유경험시 법적인 대응 유무	
	미체결	체결	1건당 고정 비율	1건당 고정 금액	수수료 없음	잘 모름	없음	있음
전체	62.7%	37.3%	53.1%	10.5%	5.5%	30.9%	95.0%	5.0%
웹개발, 디자인	58.8%	41.2%	85.9%	7.1%		7.1%	94.2%	5.8%
문서작성, 번역	59.0%	41.0%	37.7%	11.5%		50.8%	92.9%	7.1%
디자인, 영상편집	56.9%	43.1%	70.6%	6.4%	1.8%	21.1%	97.6%	2.4%
웹툰, 웹소설	43.8%	56.3%	62.5%	12.5%	6.3%	18.8%	100.0%	
콘텐츠작업	89.7%	10.3%	16.2%	7.4%	2.9%	73.5%	100.0%	
예술, 창작	75.0%	25.0%	43.8%	18.8%	14.6%	22.9%	95.8%	4.2%
IT분야	38.1%	61.9%	38.1%	23.8%	9.5%	28.6%	92.9%	7.1%
광고, 마케팅	75.0%	25.0%	33.3%	16.7%	16.7%	33.3%	75.0%	25.0%
기타 작업	47.2%	52.8%	41.7%	13.9%	25.0%	19.4%	90.9%	9.1%

○ 웹기반 플랫폼노동의 부당대우 유경험(9개 영역)은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25.7%), ▲작은 작업 내용 변경(22.4%), ▲작업 보수 지연 지급(17.8%), ▲부당한 지속적인 수정 요구(17.3%), ▲일반적 계약 정지 및 해지(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크몽은 부당한 지속적 수정 요구, 계약조건 이외 작업 요구, 작은 작업변경 요구, 크라우드웍스는 작업보수 지연지급과 계약정지·해지가 높았음([표6]).

5) 김종진(2022),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 : 계약 불균등성과 권리부재」, 《이슈페이퍼》, 제167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2024),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 시각시대 현실과 과제」, 《이슈와쟁점》, 제37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 플랫폼노동 활동 분야별 부당대우 유경험 특징은 웹개발·웹디자인은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지속적 수정, 작은 작업 내용 변경이 많았고, 웹툰·웹소설은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작업보수 지연지급, 일반적 계약기간 연장이 많았음. 한편 IT 분야는 작업보수 지연지급, 일방적 계약정지·해지가 많았음. 예술창작 분야는 작업 보수 지연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12]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부당 대우 유경험 유형1 - 플랫폼 유형

플랫폼	9개 항목	부당한 지속적인 수정 요구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작은 작업 내용 변경	불공정한 계약조건 불이익	일방적 계약 기간 연장	일방적 계약 정지 및 해지	작업 보수 미지급	작업 보수 지연 지급	작업 보수 일방적 삭감
전체		17.3%	25.7%	22.4%	9.6%	9.4%	12.3%	6.4%	17.8%	8.1%
크몽		26.8%	37.7%	29.4%	12.7%	12.3%	14.5%	7.5%	18.9%	11.8%
숨고		12.0%	19.4%	17.6%	9.3%	9.3%	8.3%	7.4%	19.4%	2.8%
클라우드웍스		10.0%	12.5%	27.5%	5.0%	10.0%	25.0%	5.0%	35.0%	15.0%
기타		1.3%	6.3%	6.3%	3.8%	1.3%	5.0%	2.5%	3.8%	1.3%

[표13]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부당 대우 유경험 유형2 - 활동분야

플랫폼	9개 항목	부당한 지속적인 수정 요구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작은 작업 내용 변경	불공정한 계약조건 불이익	일방적 계약 기간 연장	일방적 계약 정지 및 해지	작업 보수 미지급	작업 보수 지연 지급	작업 보수 일방적 삭감
전체		17.3%	25.7%	22.4%	9.6%	9.4%	12.3%	6.4%	17.8%	8.1%
웹개발, 디자인		36.5%	41.2%	37.6%	15.3%	9.4%	14.1%	8.2%	15.3%	11.8%
문서작성, 번역		19.7%	24.6%	23.0%	11.5%	14.8%	13.1%	4.9%	13.1%	11.5%
디자인, 영상편집		12.8%	25.7%	19.3%	7.3%	6.4%	6.4%	2.8%	19.3%	4.6%
웹툰, 웹소설		18.8%	50.0%	25.0%	18.8%	25.0%	18.8%	6.3%	31.3%	12.5%
콘텐츠작업		8.8%	14.7%	11.8%	4.4%	7.4%	7.4%	7.4%	8.8%	4.4%
예술, 창작		14.6%	25.0%	18.8%	16.7%	12.5%	18.8%	16.7%	25.0%	12.5%
IT분야		14.3%	23.8%	23.8%		9.5%	23.8%		38.1%	4.8%
광고, 마케팅		8.3%	16.7%	25.0%	8.3%	8.3%	8.3%	16.7%	16.7%	8.3%
기타 작업		5.6%	5.6%	16.7%	2.8%	2.8%	16.7%		16.7%	5.6%

V. 맺음말 - 노동기본권과 권리 보장 문제

○ 2025년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노동자는 약 2개의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1주 4.7일 작업에 월 평균 소득은 146.7만원에 불과했음. 평균 연령은 35.8세(라틴아메리카 35세), 65.6% 여성(라틴아메리카 43.6%), 학사학위자 43%(라틴아메리카 45%)라는 속성이 확인됨. 문제

는 1주일 6일이나 7일 일하는 비중이 21.7%(라틴아메리카 34.1%)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5달러(7,019원, 라틴아메리카 4달러)에 그쳐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현실임.

[표14]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웹기반 플랫폼노동 주요 특징 비교(2025)⁶⁾

인적 속성	한국	라틴아메리카	주요 특징	한국	라틴아메리카
성별	여성 65.6%	여성 43.6%	플랫폼노동 진입 (2020년 이후)	89.7%	50%
평균 연령	35.8세	35세	작업시간 *10시간 이상 *작업 시간, 요일	1일 6.3시간	월 평균 10시간
최종 학력	43% 석박사 3.9%	45% 석박사 8%		1일 10시간 이상 작업 비율 8.6%	이상 작업일 6.5일
1주일 평균 작업 요일	1일 2.2%	1일 3.8%	시간당 임금* (중위 값)	5.0달러	4.0달러
	2일 2.9%	2일 6.2%			
	3일 12.1%	3일 9.7%	국가 최저임금 대비 플랫폼 소득 수준	69.2% 수준	브라질 1.86배 아르헨티나 2.8배
	4일 10.7%	4일 9.9%			
	5일 50.4%	5일 29.2%			
	6일 16.7%	6일 16.2%			
	7일 5.0%	7일 17.9%			

* 주 : 1) 서류, 행정 등 무급시간은 제외한 소득이며, 월 평균 소득(146.7만원)을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환산(7,019원).
2025년 10월 4일 USD/KRW 환율 1,405원 수준을 시간당 임금의 달러 환산(7,019원 ÷ 1,405원 = 약 5.00달러)

2)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이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8시간(ILO 규정)으로 환산.

* 자료 : 한국은 필자의 2025년 조사자료(N=456명)이며, 라틴아메리카는 Túlio Cravo의 2024년(N=1,153명) ILO 조사자료임.

○ 플랫폼업을 통해 일을 하면서 ‘약관’ 이외 별도 계약체결은 37.3%에 불과하고 다양한 부당한 현실과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법적 대응은 5%에 불과했음. 특히 작업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 지출은 소득 대비 21.3%인데, 1건당 작업과정에서 플랫폼의 수수료는 14.1%(25% 이상 12.4%)나 되고 있음. 낮은 단가는 과도한 수수료에 의한 문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공정한 보수 논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함.⁷⁾

○ ILO 웹 기반 디지털 플랫폼노동은 프리랜서, 클라우드워크, 자유 경쟁, 경쟁적 프로그래밍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할 수 있음. 여기에는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디자인부터 행정적 마이크로 태스크,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이 포함됨. 한국도 디지털화 및 AI 도입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6) 라틴아메리카 웹기반 플랫폼노동 조사자료는 Túlio Cravo(2025), *Survey on workers on web-based digital platforms New dat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February, 2025. ILO를 참조할 것 (<https://www.ilo.org/publications/survey-workers-web-based-digital-platforms>).

7) ILO(2021: 24)는 플랫폼노동의 약관이 노동조건을 규정한다고 보고 있기에 해당 약관은 노사정 혹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규정이 필요함(ILO,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2021).

- 2025년 웹기반 플랫폼노동 조사 결과 주요 법제도 및 개선과제로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83.1점), ▲공정계약 위한 기업 모니터링 및 감독(79.7점), ▲성희롱·감정노동·괴롭힘 등 법률 적용 마련(79.5점), ▲금융·세무·노동 관련 상담서비스(79.2점), ▲정부 출산·육아급여 지원(79.1점), ▲최소한 유급 휴일·휴가 조항 법률 마련(78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요구도가 보였음.

[표15] 웹기반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법제도 및 정책 개선과제 의견 (단위: %)

14개 분야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점수 (100점)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지원	0.7	3.1	30.3	42.1	23.9	71.4
약관 및 표준계약서 등의 법률 마련	0.4	2.0	30.5	29.4	37.7	75.5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등 지원 시스템 마련	0.4	12.1	10.5	32.0	45.0	77.2
종사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	0.4	1.5	24.8	34.6	38.6	77.4
공정계약 위한 기업 모니터링 및 감독	0.2	1.3	12.9	50.4	35.1	79.7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직무·교육훈련 지원	1.3	2.6	16.7	48.5	30.9	76.3
다양한 문제 해결 위한 협의 및 사회협약 체결	1.3	2.0	24.1	39.9	32.7	75.2
공유 작업장이나 오피스 지원	1.3	3.3	27.2	37.9	30.3	73.1
건강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0.2	2.6	18.2	48.5	30.5	76.6
금융·세무·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	0.2	1.5	12.9	52.0	33.3	79.2
플랫폼 및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	0.2	1.5	14.5	33.1	50.7	83.1
성희롱, 감정노동, 괴롭힘 등 법률 적용 마련	0.7	2.9	17.1	36.6	42.8	79.5
정부의 출산·육아급여 지원	1.8	2.4	16.7	36.0	43.2	79.1
최소한의 유급 휴일·휴가 조항 법률 마련	0.4	2.4	14.9	49.3	32.9	78.0

* 주 : 설문조사는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를 점수(0점~100점)로 환산한 것이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의견 해석

- 한편 최근 몇 년간 프리랜서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다수의 플랫폼노동·프리랜서는 현재의 일을 하기 전에 임금노동자이거나 프리랜서였고, 비경제활동(학생, 무직, 가사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재의 일을 선택한 기준은 하고 싶은 일과 자유로운 일자리 선택 혹은 원하는 소득 등이 가장 많았음. 다른 한편 2023년 기준 프리랜서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33시간 전후였고,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220만원 내외로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조금 상회하는 상황임.

[참조1] 프리랜서 노동시장 실태조사 : 경제활동, 노동이력

구분		광역시, 기초 실태조사		전국 실태조사	
		경기도 (2020년, 1천명)	성남시 (2022년, 450명)	고용노동부 (2020년, 1천명)	우분투재단 (2023년, 512명)
이전 활동	비경제활동인구	-	20.2%	32.8%	15.9%
	정규직	임금노동자	35.6%	36.1%	29.4%
	비정규직	52.9%	21.5%	19.9%	12.5%
	프리랜서/자영업	47.1%	22.7%	11.2%	22.4%
노동환경 만족도	월평균 소득	234만원	223만원	183만원	180.2만원
	1주 노동시간	-	36.7시간	33.3시간	33시간
	프리랜서 활동기간	8.1년	5.1년	5.6년	5.9년
	일한 이유 (1순위)	독립성 37.2% 일자리 특성 28.3% 일생활 병행 11.8%*	독립성/더 많은 소득 35.6% 자유로운 시간 24.4% 일자리 특성 14.6%	자유로운 시간활용 39.7% 직업특성 22.5% 일자리부족 8.1%	하고 싶은 일 27.9% 자유로운 시간활용 25.8% 원하는 일 13.5%
	사업자등록증 소유	21.7%	23.5%	15.7%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만족도	66.2점	53.8점	55.6점	-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	국민연금	34.8%	28.4%	34.1%	30.7%
	건강보험	7.9%	9.9%	26.4%	8.8%
	고용보험	80.8%	70.9%	90.3%	81.3%
	산재보험	87.6%	69.1%	75.2%	84.7%

* 자료 : 1) 노동부(20년), 성남시(20년), 우분투재단(23년)은 김중진 조사자료이며, 경기도(20년)는 한신대(장종익) 조사자료임.
2) 경기도(24년)와 서울시(24년) 각기 프리랜서 실태조사가 진행된바 있으며, 기초 지자체에서도 일부 조사된 곳이 있음.

○ 최근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조사 결과 중 계약 및 과업이행 과정의 피해는 ‘계약’, ‘보수’, ‘인권’ 침해 문제들이 주로 제기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이나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가 10명 중 2명~3명 정도였고, 계약조건 강요나 지속적인 수정도 10명 중 2명 정도 차지했음. 계약된 보수의 지연 지급은 10명 중 3명 정도였고, 임금체불과 같은 보수 미지급도 10명 중 1명을 차지했음. 최근에는 우울증 문제와 같은 프리랜서의 마음건강의 심각성도 확인됨.

[참조2] 프리랜서 주요 노동시장 상황과 특징 : 계약 및 과업이행 관련 피해 경험

부당 대우 유형		광역시, 기초 실태조사		전국 실태조사	
		경기도 (2020년, 1천명)	성남시 (2022년, 450명)	고용노동부 (2020년, 1천명)	우분투재단 (2023년, 512명)
계약 관련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일의 범위, 일정 변경 등)	87.3%	23.2%	23.8%	38.5%

부당 대우 유형		광역, 기초 실태조사		전국 실태조사	
		경기도 (2020년, 1천명)	성남시 (2022년, 450명)	고용노동부 (2020년, 1천명)	우분투재단 (2023년, 512명)
보수 관련	계약조건 외의 작업 요구	87.9%	20.5%	29.0%	25.2%
	일반적인 계약조건 강요	85.2%	16.5%	14.1%	11.9%
	계약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작업 및 수정 요구	86.0%	21.2%	21.4%	17.8%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83.1%	24.7%	30.6%	29.5%
	시장가격 또는 공식적인 거래 보 수·단가 비해 낮게 책정	86.7%	18.5%	-	-
	정산 자료 미공개	-	13.6%	14.3%	17.2%
	프로젝트 연장(추가작업)에 대한 추가 보수 미지급	-	13.1%	14.2%	-
인권 침해	계약된 보수 미지급	69.7%	10.9%	11.9%	11.3%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	78.5%	10.6%	13.9%	14.3%
	폭언	-	17.5%	13.2%	8.0%
	폭행	-	2.2%	1.6%	-
	성희롱·폭력	-	5.9%	4.3%	1.6%
	괴롭힘	-	6.9%	10.2%	6.3%

주 : 1)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2020)는 부당행위 유형험 질문에 대해서 기간제한을 하지 않고 설문하여, 해당 실태조사 부당행위 유형험 비율은 매
우 높게 나온 상황임
2) 고용노동부 전국 실태조사(2020)는 부당행위 유형험 질문에 대해서 1년의 기간 제한을 했다. 유니온센터 실태조사(2023)에서는 일방적 계약해
지 14.8%, 일방적 기간 연장 9.8% 문항이 추가되었음

[참조3]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정신건강 실태와 특징: 소득단절, 업무 자율성 관계⁸⁾

		우울 아님 (정상) ¹⁾	스트레스 관리 필요 ²⁾	우울증 ³⁾	주의 ³⁻¹⁾	위험 ³⁻²⁾
전체		49.4%	12.9%	37.7%	7.0%	30.7%
월 수입 3개월 이상 끊긴 경험	있음	37.1%	14.6%	48.3%	7.9%	40.4%
	없음	56.0%	12.0%	32.0%	6.6%	25.4%
종사자 간 경쟁 인식	심하지 않음	49.5%	13.2%	37.4%	7.7%	29.7%
	보통	56.4%	12.7%	30.9%	5.5%	25.5%
	심함	44.9%	12.9%	42.2%	7.8%	34.4%
업무 자율성	자유롭지 않음	29.8%	19.1%	51.1%	4.3%	46.8%
	보통	45.4%	13.8%	40.8%	9.9%	30.9%
	자유로움	58.6%	10.2%	31.2%	6.4%	24.8%
공정성 인식*	불공정 인식	39.2%	12.6%	48.2%	9.9%	38.3%
	보류	54.3%	15.9%	29.9%	4.3%	25.6%
	공정 인식	61.1%	9.5%	29.4%	5.6%	23.8%

* 종사자 평가 객관성, 일감 및 작업량 등 배분 공정성, 단가 및 보수 책정 공정성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후 0점~49점은 “불공정함”, 50점~51점은
“유보적”, 52점 이상은 “공정함”으로 분류했음.

** 부정적 요인은 극히 드물었다 0점, 가끔 있었다(1일~2일) 1점, 종종 있었다(3일~4일), 대부분 그랬다(5점)으로, 긍정적 요인은 역코딩한 후 총점을 구함. CES-D
20문항 기준으로 우울 수준 결단면이 제공되므로, 총점/11*20으로 환산했다. 0점~15점은 ‘우울 아님’, 16점~20점은 스트레스 관리 필요, 21점~24점은 유력우울증,
25점 이상은 확실 우울증으로 분류

8) 프리랜서 마음건강 관련 내용은 한겨레 기사(2023.11.16.) 참조(아파도 못 쉬는 프리랜서들, 일반인보다 3.3배 우울,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113157.html#cb>). 프리랜서 노동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ES-D 11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했음.

- 한편 2024년 11월 발간된 ILO 보고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법과 관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2025년 6월 ILO 제113회 총회에서는 플랫폼노동 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2026년 관련 의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음.⁹⁾ 이를 반영하듯 유럽 이외의 여타 국가들에서도 플랫폼노동 관련 국가와 의회,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자 구분, 알고리즘, 노동 및 사회보장, 최저보수,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 등 다양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표16] 주요 국가 및 지방정부 최근 플랫폼노동자 법률 및 정책 : 2024-2025

시기	국가 주체	주요 내용
2024년 12월	멕시코 의회	연방 노동법 개정 법령 제정.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분류,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요건, 알고리즘 사용, 분쟁, 데이터 보호, 차별 및 기타 사항 관한 새로운 조항 포함
2024년 09월	싱가폴	플랫폼 노동자법 제정. 이 법은 차량 호출 및 배달 서비스 부문에서 퇴직금, 산재 보상, 산업 안전 및 보건 보호, 단체 대표 및 단체 교섭 규정
2025년 02월	우루과이	법률 20.396 공포.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설정하며, 특히 배달 서비스와 도시 여객 운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권리를 규정
2024년 4월	미국 뉴욕시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은 앱 기반 레스토랑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팁을 제외하고 시간당 최소 19.56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
2024년 11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플랫폼 노동자 운전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계약을 협상할 수 있도록 주 위원회를 설립하는 투표 법안이 통과

* 자료 : ILO(2025),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law and practice update*, April 2025, ILO 내용 필자 재구성.

- 한편 싱가포르 플랫폼노동 법률은 플랫폼 노동조직 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조직은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노동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노동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연합체로 정의됨. 플랫폼 노동조합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어 파업 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등 노동조합과 유사한 권리를 가짐.¹⁰⁾
-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은 총칙과 보호(7개), 지도·감독(6개) 등 13개의 권리보장, 보칙 및 벌칙 2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법률 전체적으로 규정 조항

9)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실현(Realizing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ILC.113/Report V(1), 2023(<https://www.ilo.org/resource/conference-paper/ilc/113/realizing-decent-work-platform-economy>)).

10) 싱가포르 플랫폼노동 법률에서 노동조직 및 노사관계 조항은 3가지로 적시(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사업자, 싱가포르 경제의 이익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되어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 법률 개정 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플랫폼노동자가 기계, 장비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 플랫폼노동자가 서비스 조직 또는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자의 준비 및 프로세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절차, 플랫폼노동자가 적절한 교육, 정보, 훈련 및 감독을 받도록 보장 등이 포함됨. 2024년 싱가포르 플랫폼노동 법률(Singapore's Platform Workers Act 2024)은 관련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https://sso.agc.gov.sg/Act/PWA2024?WholeDoc=1>) 가능함.

30개 조항+@로 볼 수 있음. 각 법률은 △정의('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개념), △의무와 권리(휴가, 결사권, 안전보건), △공정계약(계약서 작성 및 보장사항), △보호 장치(성희롱, 괴롭힘, 고충처리, 사회보험, 모부성 보호), △감독 및 구제(신고, 감독, 행정조치), △지원 체계(국가 책무, 공제회 설립)로 구분됨.

[표17] 22대 국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안) 주요 사항 비교

구분	김주영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법안명 (시기, 의안번호)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4-05-31, 220510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4-10-31, 2200069)
핵심 정의	계약 형식 관계없이 직접 노무 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포함 다른 사람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 사업자: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일터에서 직접 일하고 보수받는 사람 일터 개념 구체화(작업·휴식·이동·소통 공간 포함) 사업자: 직접 보수 지급자 + 소개·알선자 포함 보수 결정에 영향 미치는 자까지 확대
의무 vs. 권리 구조	일하는 사람의 의무·책임 명시(\$7)	일하는 사람의 권리 중심 구성(\$7)
휴가·휴식 규정	근로기준법 준용 노력	1년 이상 근무시 15일 이상 명시
결사 vs. 참여	결사의 권리, 단체 구성·협의	의사결정 참여 및 대표권
산업안전보건	산안법 미적용자 보호	작업중지권 명시
그 외 차이	정책조정심의위원회(\$8)	보수시효(\$12), 정보권(\$15), 사회보험(\$16)

○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된바 있는 EU는 2024년 10월 플랫폼 경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이 채택된바 있고, 2024년 12월 1일, 오랫동안 기다려온 플랫폼노동 관련 지침이 발효되었음.¹¹⁾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EU전역에서 지역 기반 업무와 온라인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지침은 ‘플랫폼노동자’와 ‘플랫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구분함.¹²⁾

○ 결국 기존의 오분류와 근로자성 추정 조항과 노동기본권 향상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는 EU 이사회 및 집행위에서 결정된 플랫폼노동자와 플랫폼 업무 수행자까지 포괄해야만 프리랜서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노동자의 보호가 가능함. 현재 일터기본법 제정과 함께 각각 개별 법률(산업 및 사회정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기본법과 연동하여 개정하는 노력이 국회와 정부가 향후 검토해야 할 문제임.

11) EU 지침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상태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노동조건과 투명성을 개선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맥락에서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a) 고용 관계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b) 고용관계의 성격에 관계없이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데이터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12) 전자(플랫폼 종사자)는 고용 계약 또는 고용 관계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하며, 후자(플랫폼 업무 수행자)는 계약 관계의 성격이나 관련 당사자의 지정에 관계없이 플랫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함. 이 지침에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부분적으로 자영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회원국들은 2024년 12월에 발효되는 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침의 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토론1]

프리랜서 ·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와 방안

-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

프리랜서 ·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 정책 과제와 방안

-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

1. 불안정 취약노동의 확대와 일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와 소득의 극심한 불안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미비, 이해대변과 자조 역량의 취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불안정 취약노동자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노무제공의 실질에 있어서도 고용관계로 판단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도적 권리가 부재하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고용관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노동법적 권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단결권의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프리랜서는 경제법적 보호 방식이 중심이 되어왔음.
-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은 자생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노동환경에 놓여 있으며, 계약과 보수의 불공정, 미수금 발생, 장시간·불규칙 노동, 직업훈련 및 복지에서의 배제, 분쟁구제 부재, 인격권 침해 등 사회보험만으로 보호할 수 없는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음.
- 경제법은 노동관계 규율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계약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률로써, 고용안정, 사회보험, 근로조건 등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으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겪는 노동시간, 휴식, 해고 보호 문제 등은 규율의 대상이 아님. 또한 사후적 구제 중심으로 속도가 느린데다, 실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21대 국회에서부터 입법이 추진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는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은 ▲고용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법제도 보호의 틀로 포함할 수 있고 ▲계약서 교부, 보수 지급, 부당계약 해지 제한, 작업 안전, 사회보험 가입, 괴롭힘 금지 등 기본 권리 보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계약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음.

- 노동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프리랜서 위장계약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은 고용관계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 가짜 프리랜서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신규 입법 이전에도 즉각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임. 근로감독 행정력의 즉각적인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민·관이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고사례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과 분야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한편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관계 추정제도와 입증책임의 사용자 전환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임. 이는 근로감독행정의 절차·조사범위·사건처리를 단순화·효율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하지만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노동권이 All or Nothing 으로 주어지는 기존의 노동법 체제 하에서는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유연한 계약형태와 노동통제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계속될 수 있음. 고용관계 바깥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와 개인 및 노무제공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알선 업체들의 책임 부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에 대한 우려와 대안

- 기존 노동법의 적용 확대를 통한 노동자 보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 현재까지 입법발의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동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유리적용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 하지만 노동자성 판단의 어려움, 기업의 회피전략, 정보 격차, 행정역량 한계 등 해당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므로, 고용관계 추정제도 및 입증책임의 사용자 전환, 노동자성 판정 및 분쟁해결 기구 설치, 행정감독기관 역량강화, 당사자 이해대변 지원제도 활성화 등 종합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의 행정비용 확대 및 기업 노무비용 증가로 인한 일자리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근로감독행정 강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대는 필수적임.
 - 기업(특히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부담 확대 또한 회피할 수 없음. 이동노동자쉼터의 설치·운영이나 안전보건 물품지원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처럼 기업이 회피한 책임을 국가가 짊어지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함.

- 인적용역의 결과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댓가에는 일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생활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 보수수준이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나 개인에게 합리적 수준에서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터부시할 것은 아님
-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들이 대체로 권리 보장 수준이어서 실제 노무제공 상대방과 국가 공공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판단은 기우라고 보임.
- 하지만 입법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임. 단, 합리적 판단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를 이유로 입법과 제도 도입이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임.

- 기본법의 선언적 성격으로 인해 구체성이 떨어져 당사자들의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상의 법률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약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 권리보장법은 공정계약, 적정보수, 차별금지, 사회보험, 산업안전, 모성보호, 휴식·휴가권 등 기본 노동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해야 함.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법률안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자 제정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했듯 선언적 성격이 강해 법 제정의 실효성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현장 당사자들에게 체감되는 제도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관 법령의 동시 입법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이때의 패키지 법안으로는 기존 법제의 적용범위 확장으로 가능한 사회보험, 인격권, 교육훈련 관련 법령이 우선 대상임.

※ 유관 법령 패키지 법안 개정 사항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정의와 피보험자 범위 확대
- (산안법)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가·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고객응대근로자 범위 노무제공자 확대
- (근기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조항 적용 대상에 노무제공자 포함
- (고평법)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조치 의무 적용, 국가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에 노무제공자 포함, 노무제공자의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
- (평생직업능력개발법) 국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범위에 노무제공자 포함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안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입법 추진 검토 필요

- 공정계약 : 정보제공, 서면계약, 일방적 약관변경 및 계약강요 규제 등
- 적정보수 : 도급제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제 적용, 노무제공자 적정보수위원회 설치

- 미수금 방지 및 구제 : 계약 전 서면정보제공, 보수지급 기한 명시, 미이행 시 책임조항,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유사한 '보수보장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행사 포함, 공공발주 계약에 대해 에스크로 시스템 기반 프리랜서 보수 지급 보장
- 분쟁해결기구 설치 :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전담 분쟁 조정기구 설치
- 경력·소득활동 증명제도 도입 : 경력증명사업의 근거, 수행기관 자격, 관리기준 등

3. 노동권 보장 외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보호 정책 과제

1)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불평등 완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적 제약과 불평등도 큼. 또한 불안정한 소득, 일감 단절 가능성, 건강 리스크, 작업 중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장치가 미흡해 복지 수요가 높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자격요건으로 인해 공공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복지 혜택이 부재해 정규직 노동자와의 복지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감이 큼. 기존 임금노동자와의 사회보험 수급권 차이, 의료보장 차이, 은퇴 후 노후소득 차이는 계층 간 복지 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이 필요함.

(1)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필요성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범위가 문화예술인, 배달·대리운전종사자 등 플랫폼종사자와 노무제공자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들이 광범위함. 특히 가사노동자들은 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에 따라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2,00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추정치 20만 명의 1%에 불과)
-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자격에 있어 복수의 사업주나 고객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건별로 보수를 지급받는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대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 ▶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전면 확대
- 보험 부과체계를 소득기반으로 전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

- (소득기반 전환 전) 가사노동자 등 기존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직종의 대상 범위 포함
-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 인정기준 현실화
- (부분실업 인정) 노무제공을 통한 보수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필요성

-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사회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대비 본인부담이 높을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안정 노동·저임금에 놓여있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더욱 높음.
- 건강보험은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갑작스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저소득일수록 클 수 밖에 없고, 국민연금도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때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실질가입기간이 축소되어 미래 노후가 더욱 취약해짐.
- 또한 사회보험료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소득과 현재 소득의 격차로 불편을 겪고 있고 전반적으로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커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음.

○ 내용

▶ 플랫폼노동자 직장가입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확대

-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 근무형태, 종속성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간주하는 등 직장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입자격을 전환함. 타 분야 대비 사회보험 측면에서 적용 조건을 완화해 ‘전국민 의무가입’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 (플랫폼 원청사 사회보험료 부담 강화) 비정형노동자가 원·하청 구조에 종사하고, 직접 계약 대상자인 하청업체(대리점)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영세한 경우, 플랫폼 사업주(중개자), 원청사를 사용자에 준용하여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시함. 이를 통해 실질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료의 안정적 납부를 도모하고자 함.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 사회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국고 투입으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함.
-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조정 정산제도의 편이성을 확대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로 전환시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면제기간을 부여함

- ▶ 전 연령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장받는 상병수당 즉각도입
- 아프면 쉴 수 있는 정률방식의 급여수준과 전 연령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특히,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관계 특성상 유급병가의 사용이 어려워, 정말로 상병수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유급병가 도입 의무화제도를 신설해야 함.

(3) 노무제공자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노동복지지원 확대

○ 필요성

-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수.
- 기존 근로복지기금과 별도의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맞춤형 복지의 설계와 지속적 실행을 가능케 함
- 근로복지기본법의 특고·노무제공자 대상 지원사업범위에서 주거비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바, 법개정을 통해 금융·주거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 재원 확보로 보다 적극적 복지 지원을 추진.

○ 내용

-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외에 노무제공자로 확대, 노무제공자 복지기금 설치 조항 신설
- 국가의 노무제공자 대상 근로복지사업 분야에 주거안정지원 추가
- ▶ 사회연대형 기금 조성
-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플랫폼 등 이해관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불안정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4) 노동공제 활성화

○ 필요성

- 개별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복지·사회보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음.
- 노동자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상호부조와 협동적 복지를 실천하는 노동공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일하는 비전형노동자들의 단결과 이해대변의 거점으로서도 역할할 수 있음.

-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 당사자들이 상호부조 조직을 결성해 노동공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노동공제조직의 설립이나 국가·지자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요구됨.

○ 내용

-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노동공제 설립·운영·지원 등 조항 신설
- ▶ 노동공제 허브조직 지원 및 인큐베이팅 기관 설치

(5) 퇴직연금·공제 제도 도입

○ 필요성

-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는 노후준비 정도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고용관계 부재로 퇴직금 제도에서도 완전 배제되어 노후 소득 공백 발생.

○ 내용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대상 특고·플랫폼노동자 포함
-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퇴직공제 제도 도입

2) 참여적·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1) 소관부처 지정

○ 필요성

-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정책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공정거래 등 여러 부처 소관이 중복되어 있어 정책 추진이 분절적이고 일관성 부족.
- 명확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법·제도 개선이 지연되며, 유사 정책이 중복되거나 누락됨.

○ 내용

- 범정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총괄기구 설치 :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지정
- ※ 지자체 담당부서도 고용노동 관련 부서로 통일 필요

(2)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 필요성

-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고용안정, 사회보장, 권리보호 정책이 단기 시책 수준에 머물며 지속성 결여.
-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 제시 필요.

○ 방안 및 내용

-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 보수·노동시간 등 노동실태, 사회안전망 보호, 고충,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실태 등
- ▶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종합계획’ 수립 (범정부 중장기 계획)
 - 계획 수립 시 종사자, 기업,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제도화.

(3) 당사자참여 정책협의 및 이행점검기구 운영, 다층적 사회적 대화

○ 필요성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고, 제도 수용성 저하.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예방 및 공론 형성 필요.

○ 내용

- 플랫폼·프리랜서 당사자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 중층적 구성 (전체, 업종별)

[토론2]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는 불안정한 삶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가

-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는 불안정한 삶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가

-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

- 창작노동이란 여러모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창작물에는 완결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작품은 언젠가 끝이 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단순히 다음 연재를 위한 세이브 원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고 투고하는 데에도 몇 개월에서 길게는 연 단위의 시간이 드는 게 창작노동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작 노동에서 ‘작업 기간’을 말할 때 작품 기획에 드는 시간을 포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작가들도 자신의 작업 시간에 대해 답변할 때 작품을 쓰고 그리는 실제 원고 작업 시간만을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원고 작업 시간만 따져도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이 흔하다. 작품활동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는다. 여기에서 작품 기획에 드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일부 유명 작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대비 턱없이 낮은 소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적인 형태로 일해도 노동 지속성과 불안정한 소득이 눈에 띄는데, 디지털콘텐츠창작에는 노동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대두되는 것이 플랫폼들의 폐업이다.
- 아무리 언론에서 웹툰의 세계화나 K콘텐츠의 힘이니 떠들어댄들 실제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수많은 에이전시가 줄지어 문을 닫고, 결국은 작가들의 연재처인 플랫폼마저 폐업하는 형국이다. 작품을 멀쩡하게 끝내도 충분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이 업계에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재난이다. 올해 초 웹툰 플랫폼 ‘피너튼’이 문을 닫았다.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피너튼은 자사에서 작품을 서비스하던 작가들의 권리도, 콘텐츠를 구매한 독자들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일부 유명작은 플랫폼을 옮겨 연재를 이어 나갔지만, 그보다 많은 작품들이 완결도 내지 못한 채로 사라졌다.

- 창작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보장받았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노동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가 최소한의 울타리는 되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회안전망이란 멀고 먼 얘기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가입제가 된 지금도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창작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과도한 노동량으로 인해 보조 작가를 고용해야만 하는 웹툰 작가들은 그 탓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 타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웹툰보다 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웹소설의 경우 작품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저작권료로 취급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단기 계약을 위주로 하는 일러스트 작가들 역시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거절당한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매번 가입시키기가 번거로워서, 예술이 아니라 콘텐츠로 취급받아서, 회사들의 몰이해로, 그 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다.
- 당연 가입제인 고용보험도 이런데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당연히 먼 이야기이다. 소득이 턱없이 불안한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에게는 월 만 원, 이만 원조차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지금 돈을 벌더라도 이것이 언제 끊길지 모르고, 작품이 완결난 뒤로는 식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작가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을 고려하기란 어렵다. 자신의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작가들은 물론이고 독자들마저 아주 잘 아는 작가들의 직업병이 많다. 손목을 비롯한 각종 디스크는 물론이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역시 작가들이라면 어렵지 않겠거니 하는 수준이다. 질환을 이유로 무기한 휴재에 들어가는 작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 여기에 더해 독자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질환도 수두룩하다. 작가들이 모이면 그중에는 꼭 암 환자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기본적인 수면시간마저 포기해야 하는 과노동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 재택근무인 우리의 질환은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준은 모호한데 당장 드는 돈은 생긴다. 산재보험도 국민연금도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선뜻 가입할 수 없는 이유다.
- 우리가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노동에 따르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이보다 나았을 것이다. 노동 시간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다음을 준비할 기회를 최소한 이나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그것은 꿈이자 쟁취할 대상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해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3권조차 갖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권리를 얻기 위해 권리를 얻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놓는다면 그건 밀 빠진 독을 임시방편으로 막는 것에 불과하다. K콘텐츠를 논하기 전에 노동자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 밀 빠진 독의 물로 바다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노동이고, 우리는 명백한 노동자다.

[토론 3]

웹기반 플랫폼 노동의 영향과 방송노동에서의 양상

-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웹기반 플랫폼 노동의 영향과 방송노동에서의 양상

-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 새로운 노동의 진입 창구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 발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 경력이 3.6년임에도 현재 웹기반 플랫폼 활용 기간이 2.7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생애의 노동 경력의 상당 기간이 웹기반 플랫폼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웹기반 플랫폼이 노동시장 진입 창구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수치화된 방식으로 업무역량 평가가 어려울수록 경력과 인맥이 구직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할 때마다 이직을 하게 되는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대다수는 기존에 일을 같이 했던 동료의 소개로 다음 일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 방송산업에서도 방송미디어 계통 종사자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인 인맥을 통하여 구한 일자리보다 훨씬 노동조건이 불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히 드라마 산업 침체 등으로 구직난이 지속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를 보여준다. 웹기반 플랫폼을 통한 구직도 비슷한 속성을 지닐 거라는 점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 10년 전과 비교할 때, 대규모 공개채용 규모가 축소되거나 수시채용이 자리 잡으면서, 중심부 일자리 진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반면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미디어, 콘텐츠, IT, 예술, 디자인 등의 일자리는 프리랜서 계약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계약직을 채용할 일자리를 일감 단위로 계약하는 방식이 되거나, 아예 그때마다 개인에게 외주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웹기반 플랫폼은 미디어, 콘텐츠 등 분야의 새로운 진입 창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 노동 속에서 언제든지 '야생'에 던져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쌓아올리며 ‘자기 경영’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이자 노동자로 정체성을 갖게 된다.

- 과거의 “열정페이”를 생각하면 그보다 심각한 “열정페이”가 아닐 수가 없다. 과거에는 최소한 극심한 경쟁을 뚫으면 가져갈 수 있는 과실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있었지만, 단지 ‘좋아서 하는 일’ 또는 ‘하다보니 계속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 외에는 아무 미래도 약속하지 않는다. 웹기반 플랫폼에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라고 힐난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고용정책의 부재 속에서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놓기에는 진입할 수 있는 직업경로가 제한적인 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짧아질수록 열악해지는 영상노동

-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거대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의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대에는 24부작을 기본으로 했던 드라마는 16부작 또는 12부작, 급기야 더 짧은 분량이 기본이 되어 간다.¹⁾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플랫폼이 된 유튜브에서는 10~20분 정도의 미드폼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한 편에 1분 내외로 수 십 편으로 제작하는 숏폼 드라마도 등장하였다.
- 문제는 이렇게 짧아지는 영상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영상 콘텐츠 제작 노동은 더욱 짧은 호흡을 갖는다. 기존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제작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같은 짧은 콘텐츠는 2주 만에 끝나기도 한다. 고용기간이 짧다는 것은 더 자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을 보면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노동시간과 임금이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다.²⁾
- 기존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고용기간에 따라 가장 길게는 제작기간이 1년을 넘기는 영화가 있지만, 하루 또는 일주일 안에 몰아서 끝내는 광고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다. 이들의 노동환경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오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근로계약 관행과 52시간 관행이 정착해있는 영화산업과는 반대로, 하루만 찍는다는 이유로 20시간 가까이 몰아서 촬영을 하거나 훨씬 저임금으로 형성되는 짧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다.

1) 한국일보. 2024-08-13. "16부작 드라마 기다리는 당신, 옛날 사람"...드라마 분량도 '반쪽이' 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213500001042>

2) 관련하여 8월에 진행한 숏폼콘텐츠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12/15, <미디어플랫폼노동포럼>에서 발표 예정.

- 발표에서 다른 웹기반 플랫폼은 영상 작업을 짧은 단위로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자연스럽게 더욱 열악한 노동이 양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사자들은 자신의 작업 경력이 상품 소개의 하나가 되어서 웹페이지에 나열되고, 그 속에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더 좋은 가성비를 제공하는 것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고용기간 자체가 짧아지는 방식으로 변하는 점, 가격 경쟁으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낮아지는 점은 모두 노동의 재생산 비용이 충당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웹기반 플랫폼은 기업(또는 용역의 이용자)의 비용을 낮춰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노동의 재생산 비용은 개인(또는 사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콘텐츠 상품의 양극화와 노동의 양극화

-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위세는 여전하고, 넷플릭스를 경유하는 K-콘텐츠의 명성도 여전하다. 드라마 제작 편수의 급격한 축소와 산업의 침체를 외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제작되는 콘텐츠 자체의 양극화 양상 때문이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대작 드라마는 여전히 제작되고 있고, 드라마 제작 편수의 급격한 감소는 중간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 제작은 증발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의 등장은 제작비 절감을 위한 목적이 크다.
- 콘텐츠의 질이 반드시 제작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대표되는 영상 콘텐츠와 스포츠, 킬스 등으로 대표되는 양산형 콘텐츠로 콘텐츠 상품도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도 이에 따라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경쟁에 시달린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보다 긴 고용기간 동안 더 나은 대가를 받는 소수의 종사자와 고용불안에 더욱 심하게 시달리면서 저임금을 받는 다수의 종사자로 나뉘진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외주 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여러 직무는 웹기반 플랫폼이 광범위한 단가 경쟁을 촉발시킨다. 음성을 후보정하거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자막을 넣는 등의 작업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당연히 기존의 근로관계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업무 지시(의뢰)와 관리가 이뤄지게 되고, 작업물의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 비용절감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되면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최근 AI로 인한 양산형 콘텐츠가 남발되는 온라인 공간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력 자체의 경력과 숙련 형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향후 소위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나홀로, 그리고 더 외롭게. 원자화되는 일터

- 웹기반 플랫폼 노동이 만드는 변화는 비단 방송노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사무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원자화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없는 성장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규모는 늘지 않고, 자영업자화되는 외주 작업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은 하나의 조직에 속하여 수행되던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는 것에 동원되고 있다. 손쉽게 작업자를 구하는 것부터, 해당 작업자의 작업이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도구의 등장, 계약과 대금 처리에 이르기까지, 개별 작업에 대한 거래비용을 손쉽게 낮춰진 것이다.
- 기업의 인사 관리와 업무 평가는 플랫폼의 별점으로 대체되고, 그러한 관리와 평가는 과거처럼 공들여서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 조직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고 치우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개인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일을 개별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비용 절감이겠지만, 전체 사회를 놓고 본다면 기업의 조직 역량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기존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플랫폼을 매개로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매개로 불안정 노동으로 관리되는 양상은 사회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부재 속에서 숙련 인력의 양성 및 관리가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블루칼라 일자리가 쿠팡 새벽배송 규제 논쟁이 팬클럽은 일자리 논쟁으로 번졌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 쿠팡이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산업에 유입되어 숙련이나 경력을 형성해야 하는 노동력까지 끌어들이고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게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플랫폼에 의한 일종의 사막화와 다름없다.
- 이들은 일에 대한 성과도 실패도 모두 개인의 몫이 된다. 철저하게 원자화되는 것이다. 나홀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의 노동은 더 외롭게 일하는 사회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일터와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하는 것인지를 논의가 절실하다. 비정상적인 과열에 휩싸여 있는 자산 시장의 등락보다 실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하는 이들의 상황이 더 중요하게 사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 제도적으로는 당장은 광범위하게 펼쳐진 사회보험의 공백지대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주된 업무 수행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제도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의 열풍 속에서 과잉 경쟁이 이뤄지는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정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토론 4]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노동 ·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과제**

- 장영은 (청년유니온 프리랜서 커뮤니티 매니저) -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노동 ·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과제

- 장영은 (청년유니온 프리랜서 커뮤니티 매니저) -

들어가며

862만 명이라는 숫자, 월평균 146.7만원이라는 소득, 62.7%의 계약서 미체결률. 발제문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서 청년유니온에서 만난 프리랜서분들을 떠올렸다. 밤을 새워 시안을 수정하고, 플랫폼 수수료 20%를 내면서도 “그래도 일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일러스트레이터 Y,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임신한 몸으로도 일을 멈출 수 없었던 독립기획자M, 발가락이 부러졌는데도 깁스를 하고 무대에 서는 동료들 지켜봐야 했던 배우D. 오늘 토론문에서 숫자들 뒤에 있는 이름과 얼굴을, 그리고 내가 들었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권리 밖 사각지대'의 구체적 얼굴들

계약 없는 노동의 일상화

발제문에서 지적한 62.7%의 계약서 미체결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는 프리랜서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은 클라이언트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괜히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디자이너 J는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면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걸 아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배우 D는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전에는 그냥 '3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이런 식이었어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하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배우 D는 조연출로 계약했는데 오퍼레이팅까지 하라는 추가 업무 지시를 받았고, 디자이너 J는 무리한 수정 요청으로 시달렸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니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발제문에서 제시된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25.7%)', '부당한 지속적인 수정 요구(17.3%)'가 바로 이들이 겪은 현실이다.

부당대우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

발제문의 '부당대우 유경험 시 법적 대응 5%'라는 수치는 프리랜서들이 처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리랜서들은 지인 소개나 업계 내 추천으로 관계망 속에서 일감을 받는다. 한 번의 갈등이 평판에 타격을 주면, 그 여파는 연쇄적으로 다른 일감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립기획자 M은 이 평판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같은 업계 사람의 평판을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M이 클라이언트와 있었던 부당한 일을 SNS에 올렸을 때 주변에서는 "그런 거 사람들이 좋게 안 본다, 누가 너랑 일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부당함을 공론화하는 순간, 좁은 업계 안에서 소문이 퍼져 다음 일감을 얻기 어려워진다. 디자이너 J 역시 "유명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을의 입장"이라며, 무리한 수정 요청을 받아도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 부당함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프리랜서들에게 '평판'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배우 D는 계약에 없던 오퍼레이팅 업무를 거부했다가는 다음 캐스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디자이너 J는 끝없는 수정 요청에도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침묵했다. 발제문에서 제시된 부당대우 유형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일감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침묵을 선택한다.

2. 온라인 플랫폼: 기회인가, 착취인가

과도한 수수료와 감시 체계

발제문에서 지적한 평균 14.5%의 플랫폼 수수료는 현장에서는 더 가혹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일러스트레이터 Y는 크몽에 20% 수수료를 내는데 "너무, 너무해요."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기도 해요"라고 했다. 초보 프리랜서는 포트폴리오도 없고 관계망이 없기에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일감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다. 그래서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Y는 "채팅방 안에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다든지 메일을 주고받으면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감지해서 경고를 줘요."라고 했다. 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플랫폼 이용이 제한된다. 프리랜서들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 수수료를 피하려는 시도조차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일감을 중개해주면서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모든 소통을 통제하고 감시한다.

일본어 강사 E은 숨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 플랫폼은 견적서를 보낼 때마다 캐시

가 필요해 58,000원부터 119,000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한다. 크몽처럼 거래 수수료를 떼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감을 얻기 위한 초기 진입 비용이 필요한 구조다. 일을 따내기도 전에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또 결제해야 하는 비용이 따로 있다고 했다.

단가 후려치기와 시장 왜곡

디자이너 S는 "크몽 같이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가 많아져서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데, 새로 프리랜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으니 시장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플랫폼에서 형성된 저가 시장은 업계 전체의 단가 기준을 무너뜨린다. 클라이언트들은 "크몽에서는 이 가격에 하던데요?"라며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도한다.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들도 플랫폼에서 형성된 저가 시장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플랫폼이 만들어낸 저가 경쟁 구조가 전체 프리랜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3.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과 비용 부담

창작 노동의 특수성

배우 D는 "공연 계약서에는 작업 기간이 '연습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지만, 작품 완성에 필수적인 수많은 연습, 리허설, 준비 시간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많은 부분이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했다.

움직임 창작 예술가 L은 "창작은 할당량이 없는 노동이에요. 머릿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생각들, 그것을 형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많은 시간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인건비 책정의 불공정

독립기획자 M의 사례는 프리랜서 인건비 책정의 불합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예술위원회 주관의 지원사업 기준으로 기획자는 보통 전체 사업비의 10%를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다. 2천만 원 사업이면 200만 원이다. M은 이렇게 반문했다. "8~9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200만 원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굶어 죽으라는 거지."

더 심각한 것은 10%의 인건비 허용이 아주 잘 쳐준 경우라는 점이다. 여타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기획자나 대표자의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되려 자부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프로젝트가 길어지면 사람들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야 할 일도 많아지는데, 이런 비용마저 기획자의 인건비 10%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작업 과정의 비용 부담

발제문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의 21.3%를 본인 소득에서 지출한다. 플랫폼 노동자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편집자는 작업을 위해 어도비 구독, 다빈치리졸브(색보정용), 산돌폰트, 아트리스트(음악), 프리픽(이미지, 영상 소스), 구글드라이브, 마이박스, 장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많은 비용을 선지출 하고 있다.

일본어 강사 E는 숨고 플랫폼에서 일감을 따기 위해 견적서를 보낼 때마다 필요한 캐시를 58,000원부터 119,000원까지 선결제로 충전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터 Y 역시 크몽에서 일감을 받기 위해 플랫폼 수수료 20%를 내야 하는데, 이는 작업이 끝난 후 수익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결국 본인의 소득에서 나가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플랫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리랜서들은 직종을 막론하고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일하고 있다. 화가 T는 "아트 페어에 나갔지만 작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을 때는 너무나 진이 빠지고 절망적"이라며, "작품에 쓰인 재료비, 참가비, 며칠 간의 체류비 등 금전적인 지출"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작업 비용까지 자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프리랜서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혹은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프리랜서들은 생존과 창작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한다.

4. 제도적 사각지대의 구체적 양상

사회보험의 공백

독립기획자 M은 임신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들은 육아휴직 하면 돈도 나오고 그런데 나는 그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남들만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데, 뭔가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어떤 혜택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니까." 사진작가 찌니는 "출산 전까지 바짝 벌어줘야 해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이 없으니까... 좀 서글프죠"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

배우 D의 사례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료 배우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했어요. 뼈 붙이는 수술까지 하고 깎스하고 했는데 2주만에 무대에 섰어요. 재활이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부상이 생겼을 때 조차도 공연을 빠지면 무책임하다는 인식과 다음 캐스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배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대에 서려고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뉴얼이 없었다고 한다.

5.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

현장이 증명하는 제도적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프리랜서들의 현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명확하게 증명한다. 발제문에서 프리랜서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규제(83.1점) ▲공정계약 위한 기업 모니터링 및 감독(79.7점) ▲성희롱·감정노동·괴롭힘 등 법률 적용 마련(79.5점)이 꼽힌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첫째, **공정한 계약 체계**가 필요하다. 62.7%의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겪는 추가 업무 지시와 무리한 수정 요청. 배우 D와 디자이너 J의 사례는 계약서 부재가 만든 부당대우의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플랫폼 수수료 규제와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20% 수수료, 선지불 진입 비용, 알고리즘 감시 시스템. 플랫폼은 유일한 일감 창구이면서 동시에 착취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이 1순위 정책 과제로 나타난 이유다.

셋째, **부당대우로부터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대응률 5%는 평판 시스템에 묶인 프리랜서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준다. 개인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넷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 보수 기준**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없이 출산을 준비하는 기획자 M, 8~9개월 프로젝트에 200만 원을 받는 불합리한 인건비 책정, 월평균 146.7만원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이는 제도적 배제의 결과다.

나가며

발제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EU 지침(2024)처럼 '플랫폼노동자'와 '플랫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프리랜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불안함과 싸우고 있었다. 862만 명의 프리랜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5]

나홀로 플랫폼노동 · 프리랜서 실태와 특징 토론문

- 배 인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사무관) -

[발표 자료]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실태와 개선과제 모색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온라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실태와 개선과제 모색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권리 밖 사각지대 불안정노동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실태와 개선과제 모색

산재·고용보험 적용현황, 노동환경 상황, 일하는사람기본법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2025 특고, 플랫폼노동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현황

2 / 9



국세청 인적용역 3.3% 사업소득 납부자: 2014년 400만명 → 2023년 862만명 (10년간 2배 이상 증가)

자료: 근로복지공단 (2025.6),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2025 온라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 플랫폼 작업 현황과 소득 구조

3 / 9



자료: 2025반기반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설문조사 결과 (2025.6, N=466, 엠브레인퍼블릭 의뢰조사)

2025 온라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 플랫폼 활동 공정성·투명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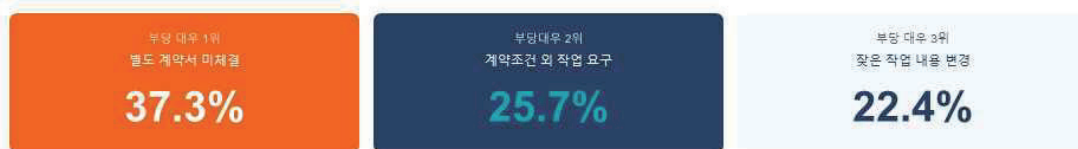
4 / 9



100점 환산 기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00점: 매우 그렇다)

2025 온라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 부당대우 경험 유형

5 / 9



원기반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부당 대우 유형별 비율(6개 분야)

한국 vs 라틴아메리카 웹기반 플랫폼노동 비교

6 / 9



자료: 한국(질자 조사, N=456), 라틴아메리카(LO Tólio Cravo 조사, N=1,153) / 2025년

2025 법제도 및 정책 개선과제 필요성

7 / 9



100점 환산 기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00점: 매우 그렇다) / 14개 분야 설문조사 결과

주요 국가 플랫폼노동자 법률 및 정책 동향 (2024-2025)

8 / 9

2024. 12 멕시코	엄청 노동법 개정 디지털 플랫폼 노동 분류, 계약 요건, 알고리즘 사용, 분쟁, 데이터 보호 차별 등에 관한 새로운 조항 포함
2024. 09 싱가포르	플랫폼 노동자법 개정 자활 교육·배달 서비스 부문 퇴직금, 산재 보상, 산업안전보건, 단체 대표 및 단체교섭 규정
2025. 02 우루과이	법률 20.396 공포 배달·도시 여객 운송 노동자 최소 보호 기준, 자영업 플랫폼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약 권리 규정
2024. 04 미국 뉴욕시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열기반 레스토랑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시간당 \$19.56 (팁 제외)
2024. 1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 결성 및 단체교섭권 부여 플랫폼 노동자 운전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계약을 협상할 수 있도록 구위원회의 설립 법안 통과

자료: ILO(2025),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law and practice update, April 2025

법제도 과제 - 22대 국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비교

9 / 9

김주영 의원안 2024.05.31 / 위안번호 2205101	이용우 의원안 2024.10.31 / 위안번호 2210098
핵심 정의 재익 형식 관계없이 직접 노무 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포함) 사업자: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핵심 정의 일터에서 직접 일하고 보수받는 사람 (일터, 작업, 휴식 이동, 소득 공간) 사업자: 보수 지급자 + 소개·알선사, 보수 결정 영향자 포함
의무 vs 권리 구조 일하는 사람의 의무 책임 명시(§7)	의무 vs 권리 구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중심 구성(§7)
휴가·휴식 근로기준법 문용 노역	휴가·휴식 1년 이상 근무시 15일 이상 명시
결사 vs 참여 결사의 권리, 단체 구성 협의	결사 vs 참여 의사결정 참여 및 대표권
산업안전보건 산업법 미적용자 보호	산업안전보건 작업중지권 명시
그 외 정책조정심사위원회(§8)	그 외 보수시효(§12), 정보권(§15), 사생활보장(§16)

22대 국회 법의 법안 비교 (김주영: 의무 책임 중심 / 이용우: 권리 중심)